

[별지 제2호 서식]

유족대표자선정서				
유 족 대 표 자	성 명 (한자)	()	주민등록번호	
	현주소			
	생년월일	· · . 생 (만 세)	해 직 공무원 과의 관계	의
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합니다.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(인) (대표자의) 위임자 주 소 성 명 (인) (대표자의) 위임자 주 소 성 명 (인) (대표자의) 위임자 주 소 성 명 (인) (대표자의)				

유족대표자선정방법

1. 유족중 보상금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.
2.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(민법 제 1000조 내지 제 1004조 참조).
 - 가. 직계비속(자녀·손자녀)이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보다 선순위이다.
 - 나.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다.
(즉,자녀가 손자녀보다,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임)
 - 다.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 순위이며,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.
 - 라.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있어서 동 순위자의 유족이 2인이상 있을 때에는 동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을 신청한다.
3.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,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한다.